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로보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- 변경 사항:
- ① 운용기간 3년 경과에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
 -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: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→ 수익률 변동성 기준
 - 투자위험등급 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→ 4등급(보통 위험)
 - ②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 - ③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- ④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 - ⑤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효력발생일: 2020. 5. 8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-	운용기간 3년 경과에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	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u>수익률변동성</u> <u>4 등급(보통 위험)</u>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운용기간 3년 경과에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	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u>수익률변동성</u> <u>4 등급(보통 위험)</u>
투자비용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기재	-	<u>2020.04.17 기준</u> <u>2020.2.28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04.17 기준</u>


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8. 31 기준	<u>2020. 3. 31 기준</u>
오기 정정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오기 정정	-	<u>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만 기재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8. 31 기준	<u>2020. 3. 31 기준</u>
가. 운용전문인력			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8. 31 기준	<u>2020. 3. 31 기준</u>
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오기 정정	-	<u>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만 기재</u>
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정로별 특징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1) 집합투자증권 :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	<u>1) 집합투자증권 :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
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든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	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	<u>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)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	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위험등급 변경 내역	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투자위험등급 : 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u>수익률변동성 표준편차 : 9.25% 투자위험등급 : 4 등급(보통 위험)</u>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		<u>2020.5.8. : 3 등급 → 4 등급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04.17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	<u>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. 연 1,800 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</u>
나. 과세			
4)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		

포함)

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

공제제도

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 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

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

-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

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 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

공제제도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 참조

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
 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
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
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
 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
 에 제외됩니다.
 ※ 지방소득세 별도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04.17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04.17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04.17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9. 30 기준	<u>2020. 3. 31 기준</u>
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업데이트	-	<u>업데이트</u>
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업데이트	-	<u>업데이트</u>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3)수익자총회 결의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 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 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 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 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 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 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
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

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
있습니다. 있습니다.

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
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
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
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
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
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 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
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 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
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
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
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
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
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 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
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
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
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 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
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 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
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
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
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
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
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
하는 사항

<신설>

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
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
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
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
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
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
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
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
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
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

야 합

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증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

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
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

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

1. 대상금액 : 제 38 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

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

합

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

종합소득금액 (총 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	600만원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(700만원)	(900만원)	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12%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기한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